

2026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

2026. 7.



예 천 군
[기 획 예 산 실]

2026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

1 감사개요

- ☐ **감사기간** : 2026. 6. 23.(화) ~ 6. 26.(금) (4일간)
- ☐ **감사범위** : 2024. 8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
- ☐ **감사반** : 감사팀장 외 4명

2 감사결과

- ☐ **행정상 조치**
 - 6건(시정2, 주의4)
- ☐ **재정상 조치**
 - 해당없음
- ☐ **신분상 조치**
 - 해당없음

3 지적사항

- ☐ **특별휴가 규정 미준수 ⇒ 조치사항 : 시정**
 -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VII.휴가 4.휴가종류별 실시방법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최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 또는 주민등록등본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(진료내역서 등)를 증빙하여야 함.
 -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육아시간,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필수 증빙서류 ○○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 -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고,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.

□ 보건진료소 수입금 납입 소홀 ⇒ 조치사항 : 주의

- 「지방회계법」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금고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, 그 밖의 경우는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의료사업수입(진료수입) ○○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.
-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,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.

□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⇒ 조치사항 : 시정

- 「지방회계법」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(징수관)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수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징수결정 시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·결재(수기 또는 전자), 징수부 등재 후 해당 납부 고지서를 발행해야 함.
-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징수결의서 작성·결재(전자) 없이 □□□건의 진료 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.
-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현황의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처리하시고,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,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.

□ 주차장 사용료 납입 소홀 ⇒ 조치사항 : 주의

- 「지방회계법」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금고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, 그 밖의 경우는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주차장사용료 ○○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.

○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,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.

□ 계약서류 징구 소홀 ⇒ 조치사항 : 주의

○ 「예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르면 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.

○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계약 시 관련 서류(□건)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.

○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.

□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⇒ 조치사항 : 주의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및 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 및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공공운영비로 ○건의 공사를 집행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

○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.

4 모범 사례

찾아가는 영유아 영양제 배부 지원사업 추진

추진배경

- 영유아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6~60개월 영유아에게 1년에 2통 영양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바쁜 일상에서 영양제 수령·방문이 다소 어려움
-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, 어린이집·유치원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양제를 배부하는 맞춤형 전달 방식 도입 필요

추진개요

- 기 간 : 2025. 8월 ~ 9월
- 대 상 자 : 관내 어린이집 원아
- 내 용
 - 관내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영양제 미수령 영유아 명단 확인 후 기관을 통한 영양제 배부
 -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배부 일정 조율 및 수령 확인 시스템 구축
 -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,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영양제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자 인식 제고

추진계획

- 출생신고 시 리플릿 배부를 통한 홍보
- 예천 소식지 배부를 통한 홍보

기대효과

- 영양제 배부를 통해 영유아 건강 증진